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17.12.11.)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3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1. 21.

나.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11명)

(공동발의: 이성복, 변상원, 이흥희, 권재경, 최광열,  
형남현, 김종두, 표주숙, 김향란, 박희순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1. 2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2. 6.

## 2. 제정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수리업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장애인 보장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경제적 성장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자동차의 급증 등으로 예상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장애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나. 오늘의 정상인이 내일 장애인이 되는 사회에서 장애인등이 정상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므로 이 조례 제정은 시대적 소명이라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1. 21.

나. 발 의 자: 형남현 의원 대표발의(6명)

(공동발의: 박희순, 강철우, 표주숙, 이성복, 변상원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1. 2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2. 6.

## 2. 제정이유

- 관내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기준과 대상자 신청·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빨라 금년에 고령사회(14%이상)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나. 특히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우리군도 10월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920명으로 25.3%를 차지함.

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건강나이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1. 2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1.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2. 6.

## 2.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사회 환경 변화와 보다 나은 군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1. 2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1.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2. 6.

## 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①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 거창군 교통의 요충지로서 마리면은 평소에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청사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향후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2. 취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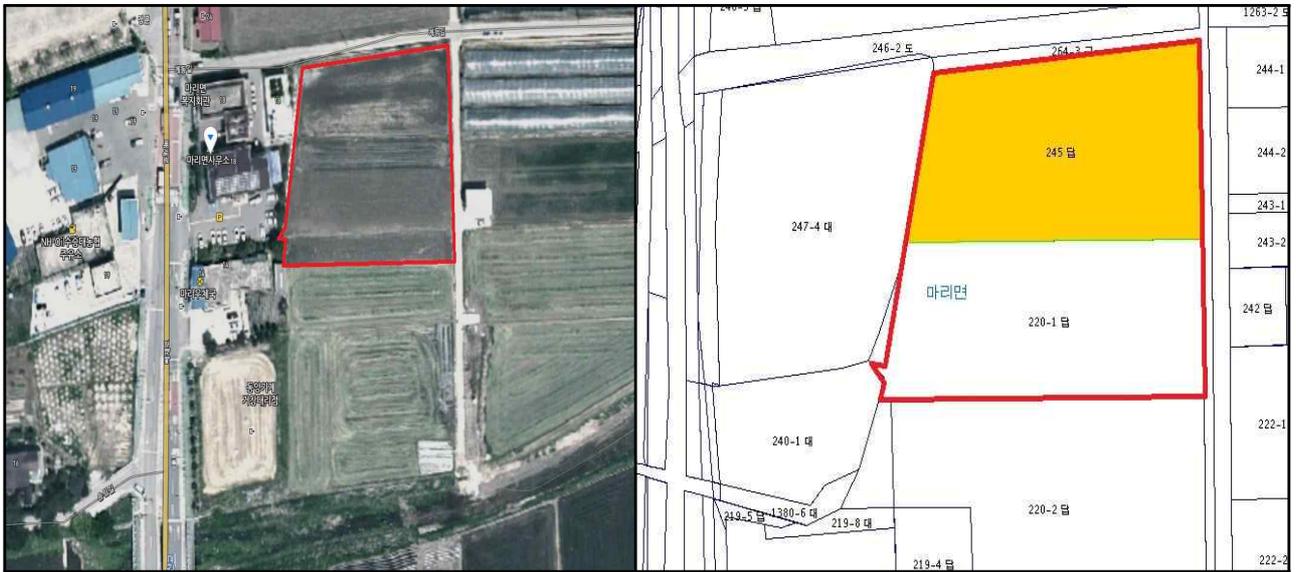
- 가. 사업기간: 2018. 1. ~ 12.(12개월)
- 나. 사업비: 200백만원(군비)
- 다. 사업규모: 2필지, 4,166㎡
- 라. 사업내용: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 3.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2필지		4,166	49,992			
취득	토지	마리면 말흘리 245	답	2,126	25,512	2018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박**
취득	토지	마리면 말흘리 220-1	답	2,040	24,480	2018		전**

### 4. 위치도



## ②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 1. 제안이유

-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폐기물처리시설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한 김용마을의 주거환경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 앞 주민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등) 설치 부지 확보가 필요

### 2. 취득개요

- 가. 사업기간: 2018. 1. ~ 6.(6개월)
- 나. 사업비: 250백만원(기금)

다. 사업규모: 1,951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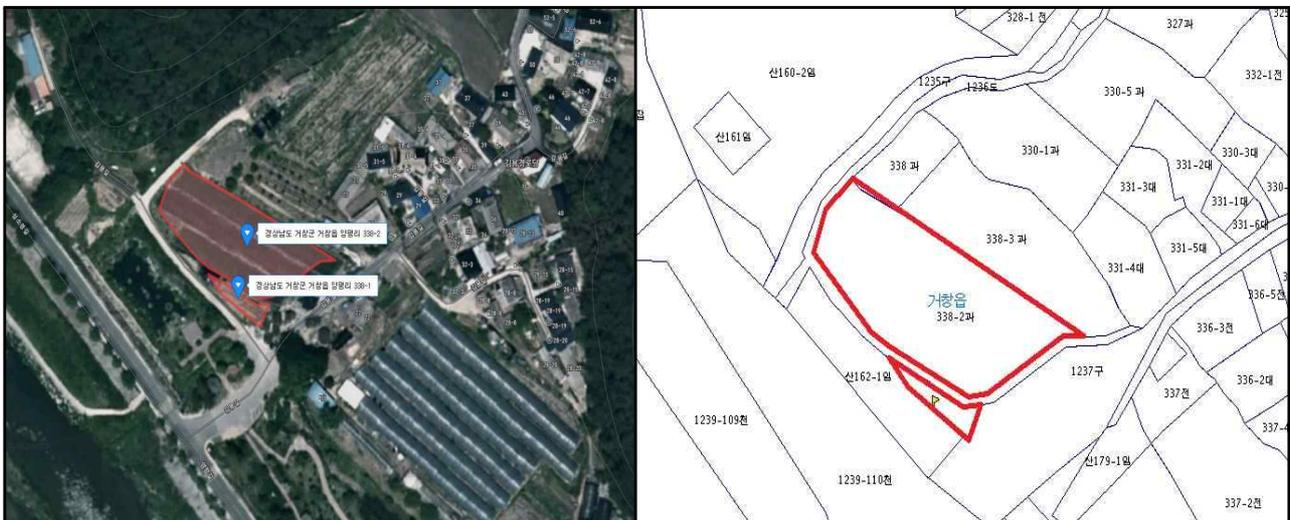
라. 사업내용: 김용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등) 설치

### 3.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951	41,543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338-1	전	139	2,585	2018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최**
		거창읍 양평리 338-2	과수원	1,812	38,958			강**

### 4. 위치도



## ③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

### 1.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연합사업 성장의 제한 및 출하 성수기 집단 개별출하로 계통 분산 출하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농산물 가격안정 등의 해결을 위한 『2018년 서북부경남 거점APC 보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2. 취득개요

가. 위 치: 거창읍 대평리 1347, 면적 33,819m<sup>2</sup>(소유자: 거창군)

나. 사업기간: 2018.1. ~ 12.(12개월)

다. 사업규모

- 신축: 집하선별포장장 2,000m<sup>2</sup>(저온저장고 330m<sup>2</sup>포함)  
선별상자보관창고(비가림시설) 1,653m<sup>2</sup>

- 보수: 선별장 지붕보수 6,324m<sup>2</sup> ※ 기존 건축면적: 11,093m<sup>2</sup>

라. 사 업 비: 2,771백만원(기금 1,385 /도비 415.5 /군비 970.5)

- 집하선별포장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 2,314,300천원

- 선별상자보관창고 비가림 시설설치: 140,500천원

- 선별장 지붕보수: 316,200천원

마. 주요기능: 서북부경남 과수 거점산지유통

## 3.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토 지 소유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계					2,454,800			
취득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47	창고 용지	2,000m <sup>2</sup> (저온저장고 330m <sup>2</sup> )	2,314,300 (저온저장고 314,300)	2018	집하선별포장장 및 저온저장고신축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 (선별상자보관창고)	창고 용지	1,653m <sup>2</sup>	140,500		비가림 시설설치	거창군

## 4. 위 치 도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①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 가. 면사무소는 지역의 행정, 문화 등 소재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각종 민원, 행사, 축제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며,
- 나.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은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음.

#### ②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 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매립시설, 화장장 등은 어느 지역이나 달갑게 받아들이는 지역은 없는 실정으로 기존시설을 연계하여 증설해 가는게 상례다
- 나. 과거에는 상호 이해와 상생으로 민원을 해결해 왔지만 최근들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 및 요구 조건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혐오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 다. 김용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③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

- 가. 서북부경남 거점APC는 2009. 10. 25 거창, 함양, 합천 공동으로 19,303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2012. 09월 3,279백만원을 시설 보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나. 경영실적은 적자운영으로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연합사업 성장의 제한 및 출하성수기 집단 개별출하로 계통 분산 출하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
-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지만 시설확충만으로 경영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경영혁신과, 시스템 종사자의 마인드 등의 개선 없이는 흑자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확충 후 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